

[수원] 공무원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통계청 수원사무소 공무원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 26.

통계청 수원사무소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근무부서	출장지역	채용구분	채용인원	계약방법	채용기간
수원사무소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	1명	근로계약	2024.2.7.~2024.5.3.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4층 / 전화번호: 031-230-0700

2. 담당업무

직종	주요 담당업무
통계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수원사무소 소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업무 수행- (표본 관리) 조사대상처(응답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신규 조사대상처 설득- (자료 수집) 통계조사 자료수집,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자료 입력- (주요 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업무분장 예정

3.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보수: 일급 70,370원, 표본관리비 200,000원/월, 정액급식비 140,000원/월
- 기타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 이중 취업(겸업) 불가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조촉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6.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4.1.26.(금) ~ 2024.2.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 접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접수기관	담당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제통계팀 이명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4층	dawn@korea.kr	031-230-0772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2.5.(월) 17시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i/>) 채용정보 게시
- 2차 면접전형: 2024.2.6.(화) 10시부터
 - 면접장소: 통계청 수원사무소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4.2.6.(화) 17시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i/>) 채용정보 게시

7.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① 응시원서(붙임1 서식)
 - ② 자기소개서(붙임2 서식)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서식)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 자격사항 증빙서류
 - ② 우대사항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붙임4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가점 사항 상세

- 자격증(최대 5점) / ※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점수	자격증
5점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3점	사회조사분석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1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2·3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기타점수(최대 5점)

점수	제출서류
장애인(3점)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2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세대주 관련 증빙서
다자녀(2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2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10점)

· 제출 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응시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2.2.(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통계청 수원사무소 채용담당자 이명희(031-230-0772)

【붙임2】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직종	통계조사원	분야	대체근로자	응시번호	미기입
성명			연락처		

【 지원동기, 경력 및 포부를 자유롭게 기재 】

- 지원동기 및 포부, 통계청 및 지자체 조사관련 경력,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

